



Creating the future, together Korean Tax Newsletter

2021년 11월

• 예규·판례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상 일부 품질 보증 업무도 판매제품에 대하여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 등으로 이는 연구과정 결과에 파생되는 업무로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1 중 3104, 2021.11.01)

▣ 처분의 경위

- 청구법인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연구전담인력 인건비 000 원과 연구재료비 000 원 합계 000 원(이하 “쟁점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000 원을 신청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8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연구인력개발비를 부당하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

아 2020.10.14. 2018 사업연도 법인세 000 원 및 2019 사업연도 법인세

000 원을 각 경정·고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21. 5.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인정하는 전담부서에서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을 보유한 인력이 제품의 사용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그간의 누적된 연구결과와 반복 테스트 과정을 거쳐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공정과 상황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해 내는 과정을** 생산과정의 일환으로만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 소기업의 특성상 각종 시험설비를 생산부와 연구소에서 각각 이중으로 보유할 수가 없어 양산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양산 제품에 대하여 일부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연구소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연구소 요원 5명 중 AAA 만이 이를 일부 수행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직원 관리 및 통솔차원에서 형식적으로 계·과장이 일부 품질검사 업무에 대하여 결재하였다 하여 관리자까지 연구전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당함**
- 과세관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음
 - ✓ 기존에 이미 상용화·사업화된 기술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다소 보완 또는 변형하고 약간의 효율성이나 편리함을 더한 정도인바, 이는 **특정 거래처의 요구에 맞추기 위한 영업전략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활동에 포함된다 할 수 없음**
 - ✓ 청구법인의 연구소 소속 직원은 시험발포 업무 외에 ① 생산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 업무, ② 원재료에 대한 품질 검수 업무, ③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 업무 등을 추가적 수행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품질관리 부서(중소기업 등에서 원재료검수, 제품검수(QC), 제품보증, A/S 등을 수행하는 업무부서)의 업무에 해당되어 이를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결정이유(납세자 승)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 ✓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대부분의 제품은 소재의 고객별, 용도별 변용이 불가피한 석유화학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동 제품들은 첨가제의 미세한 변화에도 물성에 변화를 초래하여 제품의 양산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험발포는 사전에**

여러 가지 화학제품을 배합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으로 이는 체계

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서의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8 년도 업체별 시험생산한 리스트를 살펴보면 영업 부에서 의뢰하여 시험생산한 건은 103 건 중 3 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동 리스트에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연구소에서 자체개발한 신제품을 업체에서 시장성 검토 후 시험생산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연구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 청구법인은 시험발포 업무 외에 물성시험 및 원재료 품질 검수 업무 품질 보증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양산제품을 물성시험 하는 것이 아닌 그 전 단계에서 시험제품에 대한 물성시험을 하는 것으로 이는 연구개발과정의 하나로 보이는 점
- ✓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상 일부 품질 보증 업무도 판매제품에 대하여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 등으로 이는 연구과정 결과에 파생되는 업무로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 다만, 양산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업무까지 연구활동의 일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연구인력개발비 중 AAA 의 인건비는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나. 처분청이 관련 법령 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전체 매출액에서 내부거래매출액을 차감 · 산정하고, 쟁점사업 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1 서 1784, 2021.11.18)

■ 처분의 경위

- 청구법인은 2008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 CCC 와 쟁점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AAA 와의 재사용계약에 따라 연결 매출액(전체 매출액에서 내부거래매출액을 차감)을 기준으로 한 사용료를 지급해 오다가, 기존의 CCC 와 AAA 간 사용계약이 종료되면서 2015 사업연도부터 2019 사업연도까지는 최상위 지배기업인 CCC 와 직접 사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변경 · 산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손금산입함
-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쟁점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다른 사업연도와 달리, 전체 매출액에서 기업집단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매출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광고선전비만을 차감한 후 0.2%의 사용요율을 적용하여, 적

정한 사용료[[연결 매출액(전체 매출액-내부거래매출액)-광고선전비]×0.2%]보

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 심판청구를 제기함

■ 결정이유(납세자 승)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 청구법인의 쟁점 상표권 사용료에 대하여 정당한 시가의 산정과 그러한 시가 산정을 위하여 사용된 방법에 관하여 그 주장 및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 두 12006 판결 등 다수, 참조)인 점
 - ✓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는 점(법인세제과-326, 2020.3.24.)
 -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에 CCC와 직접 사용계약에 따른 그 사용료를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다른 계열사인 (주)DDD이 CCC와 직접 사용계약에 따른 산정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조심 2020 서 338, 2020.12.22.)

다. 공익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이 사업부지 경계에 있는 출입로를 정비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관의 소유자에게 도시가스 공급관을 이설 요청하고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서면-2021-법령해석부가-7096, 2021.11.30)

<예규 전문>

■ 질의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도시가스사업법」 상의 사업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 '19.3 월 신청법인의 도시가스 공급지역인 경기도 ○○시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으로부터

- 재건축정비 사업부지 경계에 있는 출입로를 정비하여야 하므로 신청법인의 도시가스 공급관을 이설하여 줄 것을 요청받음

- 이에 신청법인은 조합의 요구에 따라 '19.3 월 도시가스 공급관을 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조합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이설비용을 청구하였고

- '19.5 월 조합은 이설비용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반환을 요구함

(질의내용)

- 공익사업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부지 경계에 있는 출입로를 정비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관을
 - 그 소유자인 도시가스사업자에 이설을 요청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수행한 이설 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자가 아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부지 경계에 있는 출입로를 정비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관의 소유자인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도시가스 공급관 이설을 요청하고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 16 조제 6 항에 따라 소유자의 도시가스 공급관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4 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Back to top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86,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21.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To no longer receive emails about this topic please send a return email to the sender with the word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